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13.

나. 제안자: 마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 11. 13.

○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12. 2. ~ 12.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20. 12. 9.

라.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0. 12. 10.)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 12. 11.)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0. 12. 14.)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0. 12. 15.)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0. 12. 16.)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0. 12. 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나. 제출내역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주요내용

-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5개 기금, 550억 1,00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5,634만 4천 원이 감소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I 기금운용 계획

####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b>합 계</b>	<b>67,066,396</b>	<b>13,001,982</b>	<b>25,058,326</b>	<b>55,010,052</b>	<b>△12,056,344</b>
재 난 관 리 기 금	1,363,479	1,138,364	601,324	1,900,519	537,040
남북교류협력기금	421,320	106,499	100,000	427,819	6,499
중소기업육성기금	3,089,599	2,675,368	4,500,420	1,264,547	△1,825,052
자 활 기 금	1,732,760	40,000	77,315	1,695,445	△37,315
노 인 복 지 기 금	1,313,880	26,298	26,000	1,314,178	298
양 성 평 등 기 금	2,146,279	40,000	40,000	2,146,279	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71,396	54,389	30,420	895,365	23,969
재 활 용 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048,722	51,125	178,825	921,022	△127,70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 련 기 금	6,204,322	3,056,494	1,872,227	7,388,589	1,184,267
옥외광고발전기금	1,502,387	418,000	757,800	1,162,587	△339,800
도로굴착복구기금	1,769,772	801,770	1,103,540	1,468,002	△301,770
식 품 진 흥 기 금	2,679,336	346,466	612,125	2,413,677	△265,659
저 소 득 주 민 주 거 안 정 기 금	2,211,429	1,130,817	3,193,540	148,706	△2,062,723
공유재산관리기금	40,679,550	2,949,300	11,820,450	31,808,400	△8,871,150
거 리 가 게 자 립 지 원 기 금	32,165	167,092	144,340	54,917	22,752

## 2.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용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 ㉠+㉡
<b>합 계</b>	<b>55,010,052</b>	<b>11,335,296</b>	<b>66,345,348</b>
재 난 관 리 기 금	1,900,519	0	1,900,519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427,819	0	427,81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264,547	11,120,316	12,384,863
자 활 기 금	1,695,445	0	1,695,445
노 인 복 지 기 금	1,314,178	0	1,314,178
양 성 평 등 기 금	2,146,279	0	2,146,279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895,365	79,960	975,325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기 금	921,022	0	921,022
마 포 자 원 회 수 시 설 관 련 기 금	7,388,589	0	7,388,589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162,587	0	1,162,587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468,002	0	1,468,002
식 품 진 흥 기 금	2,413,677	100,653	2,514,330
저 소 득 주 민 주 거 안 정 기 금	148,706	34,367	183,073
공 유 재 산 관 리 기 금	31,808,400	0	31,808,400
거 리 가 계 자 립 지 원 기 금	54,917	0	54,917

## II 기금별 사업 계획

### 1. 기금별 세부사업 및 주요 증감내역

(단위: 천 원)

세부사업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b>합 계</b>	<b>80,068,378</b>	<b>78,999,335</b>	<b>1,069,043</b>	<b>1.35%</b>
<b>재 난 관 리 기 금 [ 도 시 안 전 과 ]</b>	<b>2,501,843</b>	<b>7,565,023</b>	<b>△5,063,180</b>	<b>△66.93%</b>
재해예방과 재난응급복구	601,324	515,420	85,904	1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구호비용 15,904천 원 신규 편성</li> <li>■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비 및 재난응급복 및 예방사업비 7천만 원 증액 편성</li> </ul>	
여유자금예치	1,900,519	7,049,603	△5,149,084	△73.04%
<b>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 총 무 과 ]</b>	<b>527,819</b>	<b>478,340</b>	<b>49,479</b>	<b>10.34%</b>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100,000	85,000	15,000	1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행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행사운영비 14,500천 원 증액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427,819	393,340	34,479	8.77%
<b>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지 역 경 제 과 ]</b>	<b>5,764,967</b>	<b>5,670,959</b>	<b>94,008</b>	<b>1.66%</b>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4,500,420	3,000,420	1,500,000	4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신규 편성</li> <li>■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0억 원 증액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1,264,547	2,670,539	△1,405,992	△52.65%
<b>자 활 기 금 [ 생 활 보 장 과 ]</b>	<b>1,772,760</b>	<b>1,800,198</b>	<b>△27,438</b>	<b>△1.52%</b>
자활근로사업 지원	77,315	80,800	△3,485	△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등 3,485천 원 감액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1,695,445	1,719,398	△23,953	△1.39%

세부사업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b>노인복지기금 [ 노인 장애 인과 ]</b>	<b>1,340,178</b>	<b>1,334,714</b>	<b>5,464</b>	<b>0.41%</b>
노인복지기금 사업지원	26,000	27,420	△1,420	△5.18%
	■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1,420천 원 감액 편성			
여유자금 예치	1,314,178	1,307,294	6,884	0.53%
<b>양성평등기금 [ 여성 가족 과 ]</b>	<b>2,186,279</b>	<b>2,178,041</b>	<b>8,238</b>	<b>0.38%</b>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운영	700	1,400	△700	△50.0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35,000	31,000	4,000	12.90%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비 4,000천 원 증액 편성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4,300	3,600	700	19.44%
여유자금 예치	2,146,279	2,138,041	8,238	0.39%
<b>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 청소 행정 과 ]</b>	<b>925,785</b>	<b>874,760</b>	<b>51,025</b>	<b>5.83%</b>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30,420	40,420	△10,000	△24.74%
	■ 학자금 대여 10,000천 원 감액 편성			
여유자금예치	895,365	834,340	61,025	7.31%
<b>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 청소 행정 과 ]</b>	<b>1,099,847</b>	<b>1,258,133</b>	<b>△158,286</b>	<b>△12.58%</b>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178,825	251,220	△72,395	△28.82%
	■ 의류수거함 설치비 156,925천 원 감액 편성			
여유자금 예치 등	921,022	1,006,913	△85,891	△8.53%
<b>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 청소 행정 과 ]</b>	<b>9,260,816</b>	<b>8,419,340</b>	<b>841,476</b>	<b>9.99%</b>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1,872,227	2,304,098	△431,871	△18.74%
	■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공단 전출금) 12,075천 원 감액 편성			
	■ 청소차량 교체비 420,000천 원 감액 편성			
여유자금 예치	7,388,589	6,115,242	1,273,347	20.82%

세부사업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b>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 도 시 안 전 과 ]</b>	<b>1,920,387</b>	<b>1,625,037</b>	<b>295,350</b>	<b>18.17%</b>
광고물 개선사업	757,800	750,800	7,000	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설치 공사비 41,000천 원 감액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1,162,587	874,237	288,350	32.98%
<b>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 도 로 과 ]</b>	<b>2,571,542</b>	<b>2,498,850</b>	<b>72,692</b>	<b>2.91%</b>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기금)	1,103,540	1,103,540	0	0.00%
여유자금예치	1,468,002	1,395,310	72,692	5.21%
<b>식 품 진 흥 기 금 [ 위 생 과 ]</b>	<b>3,025,802</b>	<b>2,615,583</b>	<b>410,219</b>	<b>15.68%</b>
식품진흥기금 운용	612,125	554,870	57,255	1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지도점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7,800천 원 증액</li> <li>■ 신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 18,000천 원 신규 편성</li> <li>■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16,600천 원 신규 편성</li> </ul>			
여유자금예치	2,413,677	2,060,713	352,964	17.13%
<b>저 소득 주 민 주 거 안 정 기 금 [ 생 활 보 장 과 ]</b>	<b>3,342,246</b>	<b>1,998,357</b>	<b>1,343,889</b>	<b>67.25%</b>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1,760	2,680	△920	△34.33%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3,081,780	1,767,200	1,314,580	7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임차보증금 30,000천 원 증액 편성</li> <li>■ 연남동 마포하우징 건립 주택 공사비 2,295,800천 원 신규 편성</li> <li>■ 주택 매입비 2억 원 감액 편성</li> <li>■ 물품 구매비 4천만 원 감액 편성</li> <li>■ 감리비 229,580천 원 신규 편성</li> </ul>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110,000	110,000	0	0.00%
여유자금예치	148,706	118,477	30,229	25.51%

세부사업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률(%)
<b>공 유 재 산 관 리 기 금 [ 재 무 과 ]</b>	<b>43,628,850</b>	<b>40,682,000</b>	<b>2,946,850</b>	<b>7.24%</b>
행정재산취득	11,820,450	2,450	11,818,000	48236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비(토지교환 차금) 43억 5천만 원 신규 편성</li> <li>■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2억 원 신규 편성</li> <li>■ 매입 경로당 개보수비 8천만 원 신규 편성</li> <li>■ 경로당 매입비 41억 8,800만 원 신규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31,808,400	40,679,550	△8,871,150	△21.81%
<b>거 리 가 게 자 립 지 원 기 금 [ 건 설 관 리 과 ]</b>	<b>199,257</b>	<b>136,510</b>	<b>62,747</b>	<b>45.97%</b>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1,840	1,345	495	36.80%
자립지원기금 용자 및 지원	142,500	103,000	39,500	3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안정자금용자금 4천만 원 증액 편성</li> </ul>	
여유자금 예치	54,917	32,165	22,752	70.74%

### Ⅲ

## 종합 검토 결과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자체 기금’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이 있으며,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자금을 적립하며 기금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 근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음.
-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행정 여건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남북교류협력사업 행사 운영비 1,450만 원 증액 부분은 그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5억 원 신규 편성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운영 자금 대출용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음.



-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비가 각각 증액된 양성평등기금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지출계획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기금을 통한 적극적 재정활동으로 양성평등 사회 기반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 지출을 위해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금 설립 목적에 맞는 적극적 운용이 필요해 보임.
- 기금의 대부분은 조례에 의한 임의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여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사항: 없음**